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통합재정
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9 월 3 일

여 수 시 장 김기현



여수시 조례 제2094호

붙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10퍼센트”를 각각 “100분의 1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활용해야”를 “활용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평균금액보다 감소한”을 “평균금액 또는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세입 재원의 보전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특별회계의”를 “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필요하다고”를 “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총액 중”을 “총액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 금고”를 “통합기금을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시 금고”로, “설치하여 통합기금을”을 “설치하되,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로 하고 “운영해야”를 “운영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주요 항목”을 “주요항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

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수행하지”를 “수행하기”로 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<u>10퍼센트</u>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2.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<u>10퍼센트</u>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<u>활용해야</u> 한다.</p> <p>1.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<u>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</u>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10</u>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<u>100분의 10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활용하여야</u> -----</p> <p>1. ----- -----<u>평균금액 또는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세입 재원의 보전이 필요한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</u>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</p> <p>6. 그 밖에 시정 추진에 <u>필요하다고</u> 시장이 인정한 경우</p> <p>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<u>총액</u> 중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</p> <p>① 시장은 <u>시 금고</u>에 별도의 계좌를 <u>설치하여 통합기금</u>을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<u>운용해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<u>위원회</u>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특별회계, 다른 기금</u>-----</p> <p>6. ----- <u>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</u> -----</p> <p>④-----</p> <p>----- <u>총액의</u> -----</p> <p>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</p> <p>① ----- <u>통합기금</u>을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<u>시 금고</u>----- -----<u>설치하되, 여유자금에</u> 대해서는 <u>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</u>으로 ----- <u>운용하여야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<u>주요 항목</u>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<u>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요항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<u>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</u></p> <p>2. <u>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</u></p> <p>3. <u>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사항 등</u></p> <p>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개별 기금의 조례로 지정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</u></p> <p>2. <u>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u></p> <p>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수행하지</u> ----- ----- --</p> <p>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